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농림수산부 축산국
정 동 홍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간 지속적인 수출호조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 하였고 지난 '86년에는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냈으며 '88년에는 100억불이 넘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와같이 무역수지의 흑자를 나타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때 엄청난 경제성장을 의미하며 무역경제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공고, 수입감시제도등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의 적절한 이용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여건이 달라져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부터의 시장개방 요구가 증대 되고 우리 상품의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 한 실정에 처해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대 되고 수입규모가 커지며 그 내용도 전품목에 걸쳐 다양화되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피해)도 여러부문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수입개방 이라는 경제물결이 현재 우리 나라의 불가피한 여건이며 국제경쟁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클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같은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법율제3895(86. 12. 31)로 대외무역법이 제정공포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상공부에 무역위원회가 설치 되어 87. 7. 1부터 업무를 개시 하고 있다.

실제로 앙고라 토끼털의 경우 과다한 수입으로 토모값이 하락되고 사육두수가 감소 되는 등 양토산업에 큰영향(피해)을 주어 한국양토협동조합에서 무역위원회에 산업영향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며 새우젖의 경우는 조사가 신청되어 잠정조치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를 한바 있다.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단순한 수입량의 급증이나 과다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즉 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구제와, 외국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므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구분된다.

이와같은 사례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수 있을 것으로 볼때 새로운 산업피해구제로서의 산업영향(피해)조사 제도와 앙고라토끼털의 추진사례를 소개하므로써 산업피해구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산업피해 구제제도란?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피해 구제 제도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공정 또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하여 수입이 갑자기 늘어 나던가 또는, 많은양을 수입하므로써, 국내산업의 균형있는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거나, 발생할때 정부가 이에 관하여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내산업이 수입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하여 국내 유망산업이나 기반이 약한 산업이 자리도 잡기 전에 저해받는 경우나 구조적으로 불황산업이 구조조정의 기회를 잃는 경우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 줌으로서 국내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단순한 수입량의 급증이나 과다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즉 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구제와, 외국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므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구분된다.

3. 각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수입의 증가는 공정한 거래이든 불공정한 거래이든간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내산업을 보호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나라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후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발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무역에 관련된 수입규제는 가트(GATT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 규정에 의거하는 것으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공정 무역 수입규제는 외국의 덤핑에 대항한 반덤핑관세, 외국의 보조금 지원에 대항한 상계관세(相計關稅), 특허권침해에 의한 규제 및 상호주의 관련조치인 301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종합무역법안이 마련되어 수입의 공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에 의해 야기되는 국내산업피해의 판정 및 그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84년에 제정된 특별수입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 Act)이 있는데 이는 다른 법령에 산재해 있던 통화외환법, 관세정율법, 수출입허가법, 상계관세법, 반덤핑법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여 일원화 한것으로서 이법은 특히 덤핑과 보조금등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키 위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긴습관세, 상계관세, 부당염가관세제도등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무역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서 기존의 수출입공고 수입감시제도 등의 일방적 사전적 수입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많은 개방압력을 받고 있어 점차적으로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보다 공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공정무역에 의한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제도로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 필요성, 제제수단 및 절차등이 정비되어 있는 덤핑방지 관세제도와 상계관세 제도를 가트(GATT)규정 등 국제기준에 어느 정도 일치 하게 운용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관리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수입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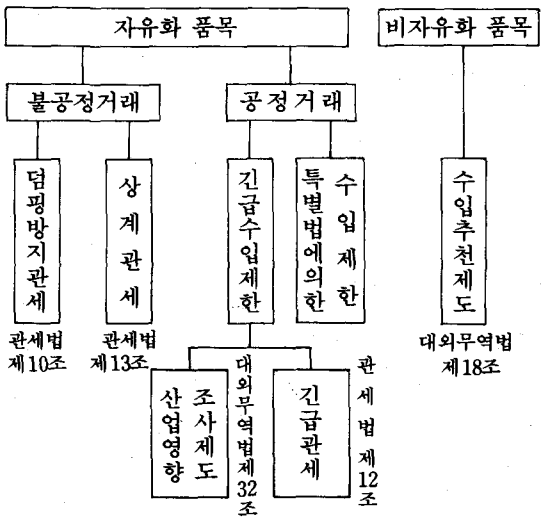

4. 산업영향(피해) 조사

공정무역에 대한 새로운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서, 대외 무역법에 의한 산업영향조사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덤핑(생산비 이하로 싸게 수출하는 행위)이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생산, 고용, 판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가. 무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무역위원회는 근래 우리의 경제시책이 수입개방화에 따라 수입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호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의 마련이 시급 하다는 각계 및 산업계의 의견에 따라 대외무역법(86. 12. 31 공포)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공부에 설치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대외무역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수입으로 인한 관련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동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한편,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조사와 동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무역업의 정지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언론계, 법조계 관계로부터 국제무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하게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율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무역위원회 산하에는 무역조사관실이 설치되어 있어 산업영향조사에 따른 실무 사무국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나.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신청

산업영향조사제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덤핑이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생산, 고용, 판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새로운 제도

대외무역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 또는, 과다한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의 발전에 이해 관계가 있는자, 또는 해당산업에 관련이 있는 단체등은 상공부장관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산업영향조사의 운영,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 상공부고시 제87—22호로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급격한 수입의 증가란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의 사실상 증가 또는, 국내생산에 대비한 수입의 상대적증가 및 증가추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증대라함은 수입이 종전에 100에서 140으로 양적으로 늘어난 것을 말하고 "상대적 증가"라 함은 비록 수입량은 크게 늘어 나지 않았다 해도(예를 들어 100에서 110으로 10%증가한 경우) 국내생산의 증가율이 2~3%인 경우와 대비해서는 현저히 큰 경우를 말한다.

또한 "과다한 수입"이란 일정기간의 수입규모 또는 수입의 국내시장 점유율등을 참고하여 과다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

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가 있는자 또는 단체라 함은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 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이상인 자를 말 하며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당해품목 생산자와 국내산업의 생산자로 조직된 협회, 조합등으로 되어 있는바 농축산물중 앙고라토끼털에 대하여 한국양토조합이 제일 처음으로 조사신청 된바 있으며 그다음이 새우젓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사례가 있다.

(2) 조사개시 결정

상공부장관은 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산업을 관장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 부의, 부의한지 30일 이내 심의·의결조사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고 조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불필요한 조사 신청의 방지와 행정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①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정당한 신청자가 아닌 경우

②수출입공고, 별도공고등에 의해 수입에 제한되는 품목

③해당수입실적이 국내산업 저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④기타 일반적인 증거등 기본적인 사실이 결여된 경우

(3) 피해의 조사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법제33조 및 조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일정, 공청회 개최시기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

현지조사는 무역조사관과 그 소속 공무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하여야 하며 조사규정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무역·경영·법율 및 산업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입증가 요인 및 정도, 당해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필요한 조치의 방법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게 된다.

무역조사관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신청된 물품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는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종결하며 기한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180일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규정 제16조와 제17조 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신청자격이 미비 하거나 국내산업발전 저해가 현저하게 경미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당해품목의 주요 수출자등이 수출을 감소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수락된 경우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중지 또는 종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피해의 판정

법 제40조 제1호, 제4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관련하여 산업피해 조사가 종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내산업이 수입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조사규정 제4조는 국내산업 발전저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장폐쇄를 포함한 생산시설의 불완전한 가동으로 상당한 시설이 유휴, 가동불능, 또는 산업내부의 상당한 실업, 불완전한 고용 또는 신규산업의 경우 생산개시가 곤란한 경우등을 말하며, 산업발전 저해 우려라함은 판매의 감소, 재고수준의 증가, 관련 국내산업의 생산, 이윤임금, 고용의 하락 또는 기대수익율의 점진적 하락추세 등을 말하고 기타 경제적요인 및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령 제75조에서는 무역위원회는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구제조치

법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령제 70조 내지 제73조와 관련하여 상공부장관은 산업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제한(5년이내의 기간에서)

②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③조사대상 업종에 대한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④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조치

또한 상공부장관은 조사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해가 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잠정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에 새우젓의 경우에 이조치를 취하여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 졌다.

(6) 재조사 신청

신청인이 상공부장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타당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으나 당초 조사에 의한 조치의 효력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7) 결과분석 및 조치의 해제

상공부장관은 조치한 날로부터 1년마다 그 조치의 결과를 분석하여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 되었을 때에는 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를 해제 한다.

<조사 및 구제조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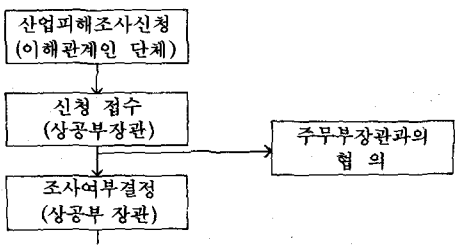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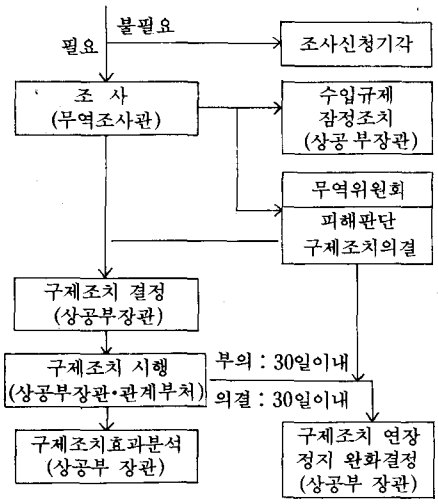

5. 축산물의 산업영향(피해)조사 사례

축산물 중 앙고라 토끼털이 처음으로 산업영향조사가 신청 되었는데 토끼털은 오래전부터 수입자유화된 품목으로서 방모사나 직물류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86년상반기 까지만 해도 국산토모를 이용한 수출이 호조를 보여 가격도 좋았으나 '86년 하반기부터 중공 칠레 등으로 부터 값싼 토모의 수입이 증가 되어 '87년에는 전년 대비 138%가 늘어나 국내산도 가격이 50%정도로 떨어져 판매도 되지 아니하고 적체 됨에 따라 국내양토농가가 도산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양토협동조합(조합장 박주식)에서는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추진경위 및 일정>

○추진경위

—조사신청 : 88. 3. 31

—조사개시 결정 : 88. 4. 30

—이해관계인 질문서 송부 및 취합 : 88. 6. 27~7. 16

—현지조사 : 88. 8. 2~8. 11

—공청회 개최 : 88. 9. 2

○향후 추진 일정

—조사종료 : 8. 10. 24

—심의·의결 : 88. 12. 24

—구제조치 결정(상공부 장관) : 98. 1월 중(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의 경우)

앙고라 토끼털의 경우에는 87년 이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가격 하락으로 양토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것으로 보이나 수출원자재라는 점과 국내산의 공급비율이 10~15%로 낮고 수요자측에서 국산품의 가격이 높고 품질(등급)이 외국산만 못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가 엇갈려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구체조치가 주목 된다.

6. 맺는 말

수출호조에 따라 계속되는 무역흑자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셀것이며 이제까지 수입제한으로 일관해온 농축산물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다.

농수축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을뿐 아니라 아직 유치산업으로서 구조적 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여건하에서 하루속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것이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므로써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